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8. . .
발 의 자	송용자의원 외 4명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용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 .

발 의 자 : 송용자 · 김낙관 · 신문식 · 양진오
이지연 의원(5인)

1. 제안이유

구미시의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미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구입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

-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이라도 지역 특화작물 육성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나.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확대(안 제8조)

- 구성 : 9명 이내 → 11명 이내
- 위원 : 구미시의회의원 추가 위촉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조금”을 “구입 보조금”으로, “농업인”을 “농업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 특화작물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미시의회의원

제8조제2항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농업분야”를 “농업 또는 농업기계 분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구미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 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목 록집의 용자지원 한도액 100만 원 이상인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자 하는 경우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 ----- ----- ----- ----- ----- ----- ----- ----- ----- ----- ----- ----- -.
1.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농업기계 보조금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농업인 <u><단서 신설></u>	1. ----- ----- 구입 보조금----- 농업인. 다만, 지역 특화작물 육성 등 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 보 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7조에 따른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제8조(구성) ① -----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9</u>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u><신설></u> <u>2.·3.</u> (생략) 4. <u>농업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 <u>11</u> <u>명</u> ----- ----- ----- -----. ② ----- ----- ----- -----. 1. (현행과 같음) <u>2. 구미시의회의원</u> <u>3.·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u>5. 농업 또는 농업기계 분야---</u> -----
---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위 조례안 제3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3조)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사업은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내 용		산출내역	금액
위원회 참석수당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70천원×5명×2회	700천원

※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4. 작성자

- 농정과 친환경농업계 전영기(054-480-5772)